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-23호

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대한 우체국쇼핑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년 5월 30일

우정사업본부장

우편취급국의 우체국쇼핑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 고시

1. 취급수수료 : 우체국쇼핑 상품별 소포요금의 7%

2. 시 행 일 : 2012. 6. 1.